

「첨단로봇·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제조로봇 관련 과제 기획 컨설팅) 모집 연장 공고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첨단로봇·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지정에 따라, 지역 내 특화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부 사업 수주 역량 확보를 위해 제조로봇 관련 사업 기획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도내 첨단로봇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한 로봇 도입 및 확산사업 등 로봇 관련 사업 기획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총 1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4백만원) * 기업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 10. 31.
- **(접수기간)** 2026. 7. 20.(월) ~ 8. 7.(금) 18:00까지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기획 컨설팅 지원	○ 제조로봇 관련 사업 기획 컨설팅 지원 - 제조로봇 도입 및 실증 등 관련 R&D, 비R&D 과제 * 예시 : (산업부)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 (중기부)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그 외 제조로봇 관련 과제 등 (불임, 타겟사업 예시 참조)	기업당 최대 4백만원, 기업부담금 없음

※ 분야별 지원금 예산한도 내에서 금액 조정 가능

※ 수행 계획서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 **(지원분야)** 제조로봇 관련 사업 기획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자료조사 및 분석비용 등 기획 비용 지원

○ **(신청자격)**

- (수혜기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전남도 소재 중소기업(본사, 지사, 공장)으로, 로봇 도입 희망, 로봇 제조기업, 공급기업, SI·SW 기업, 로봇 분야 사업전환 예정 기업 등
 - (참여기업*) 제조로봇 관련 컨설팅 전문 기업 및 기관 (지역 제한 없음)
- * 참여기업은 수혜기업에서 사전 협의 후 섭외 (섭외된 참여기업이 없을 경우 전남TP에서 추천 예정)

○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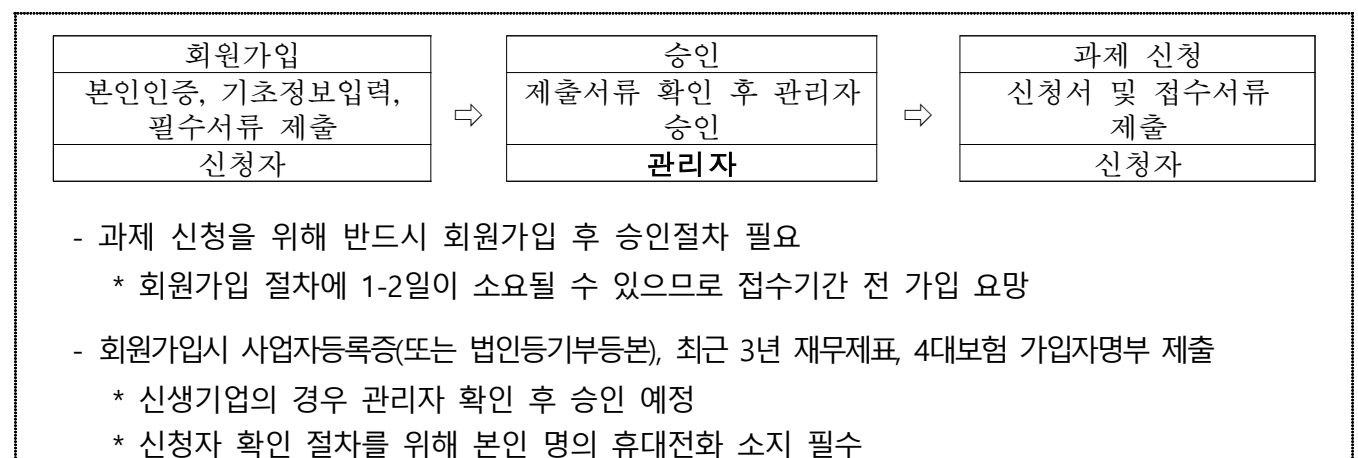
- ① 컨설팅 수행 (참여기업→수혜기업)
 - ②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타겟사업 계획서* 각 1부씩 제출
- * ‘타겟사업 계획서’는 본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의 계획서를 의미하며, 각 부처 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 ③ 제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평가 예정이며,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전남TP→참여기업)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테크노파크 데이터플랫폼(<https://data.jntp.or.kr>)

- 우편, 이메일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 온라인 과제 신청 절차
 - 제출서류는 PDF로 변환(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확인은 전남테크노파크 데이터플랫폼 홈페이지 참조

○ 사업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3 제출서류

연번	제출	제출 대상	부수	비고
1	지원신청서 및 컨설팅 수행 계획서	수혜기업	1부	필수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3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각 1부	
4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5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사본		각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9	타겟사업 모집 공고문*		1부	
* 예시 : 2026년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 등 과제 공고문				

* (3번)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① 재무제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 ②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개인사업자 등)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하며,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TP) → 선정평가(서면)
 - (사전검토) 사업참여제한, 사전제외대상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사전검토 실시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서면평가 실시
- **(평가기준)** 외부평가위원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선정(100점만점 기준)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선정
 - 평가항목

항 목	평가내용	배 점
정부사업 연계 가능성	○ 정부 R&D, 비R&D 사업 등 신청 가능성 ○ 과제 아이템의 차별성 및 정책 부합성	30
컨설팅 적정성	○ 추진 필요성·목표·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제조로봇 관련 컨설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컨설팅의 체계성 및 전문성	30
컨설팅 수행 의지 및 능력	○ 컨설팅수행 일정계획 및 수행 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 제조로봇 도입 또는 중대형 사업 기획 추진 의지	30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로봇 산업 생태계 기여 및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10
배점 합계		100

5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BI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공고문 내에 명시된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 및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2]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름

< [별표 2] 지원제외 대상 주요내용 >

- ①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의 경우
- ②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 ④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⑦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⑧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신청

6 추진일정

○ 신청서접수 : 2026. 7. 20.(월) ~ 8. 7.(금) 18:00 까지

- 7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로 당월 평가 및 협약체결 후 사업 추진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사업종료 후 기한내에 **컨설팅 결과물**을 제출해야하며, 사업수행 결과평가 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 담당 (ICT로봇융합센터)	061-395-3174	ksb@jntp.or.kr
	061-395-3177	lhs@jntp.or.kr
시스템 담당 (기업진흥본부)	061-729-2563	qorbf13341@jntp.or.kr

붙임 타겟사업 예시

구 분	소관부처명	전담기관명	사업명
1	중기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xx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2	산업통상부		20xx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3			20xx년도 AI로봇 실증사업
4			20xx년도 휴머노이드로봇 실증 지원사업
5			20xx년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6			20xx년도 서비스로봇 AX(S-M.AX) 실증사업
7	20xx년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8	산업통상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0xx년도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기반 구축 사업
9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xx년도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10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xx년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11	산업통상부	한국로봇사용자협회	20xx년 중고로봇 재자원화 공동기술개발
12	전라남도	전남테크노파크	첨단로봇·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기업지원 (기술개발)
			첨단로봇·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기업지원 (실증지원)

※ 이 외에도 추후 사업공모 예정인 '제조로봇 관련 사업' 기획 컨설팅 신청 가능